

준법 · 윤리경영 규정

목 차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정 의

제2장 준법·윤리경영 준수

제4조 법규 등 준수의무

제5조 건전한 조직분위기 조성의무

제6조 인사청탁 등의 금지

제7조 금품수수 등의 금지

제8조 이권개입 등의 금지

제9조 알선·청탁 등의 금지

제10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제11조 회사재산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제12조 환경 및 안전기준 준수의무

제13조 준법·윤리경영 준수기간

제3장 준법·윤리경영 위반시의 조치

제14조 준법·윤리경영 위반 심의

제15조 관련법규 및 사규

제1 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주)한국종합기술(이하 “회사”라 한다) 임직원이 법규를 준수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가치창조, 신뢰창조, 미래창조의 창조경영을 핵심가치로 회사의 건전한 발전과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준법·윤리경영규정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직무관련자”라 함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회사에 대하여 민원 업무를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2.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3. 기타 회사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또는 단체
 4.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간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임직원(회사가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회사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 ② “금품”이라 함은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되는 현금, 상품권, 회원권, 유가증권 및 시장성 있는 현물 등을 말한다.
- ③ “접대 및 향응”이라 함은 음식물(식사 및 음주), 골프, 공연, 사행성 오락 및 불건전 업소 등의 이용을 말한다.
- ④ “편의”라 함은 교통, 숙박, 관광 및 행사지원 등의 이용편의를 말한다.
- ⑤ “금전거래”라 함은 직무상의 지위 등을 이용한 “금전 대차”, “대출보증”, “부동산임대차” 등의 모든 거래를 말한다.
- ⑥ “이해관계자”는 “직무관련자”, “협력회사” 및 “임직원”과의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자 뿐만 아니라 이들과 협력하거나 동반한 다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 경우 직무관련성과는 무관한 포괄적 의미의 이해관계까지도 포함한다.

제2장 준법·윤리경영 준수

제4조(법규 등 준수 의무)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포함하여 관련된 제반 법규와 회사 사규를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① 자유경쟁시장의 원칙에 따라 국내외 모든 지역의 어디에서나 시장경쟁 질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② 국제기준 및 국가별 공정거래 관련 제반법규를 준수함으로써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한다.
- ③ 경쟁사와 가격, 입찰에 관한 담합을 하지 아니하며 담합을 목적으로 가격, 입찰 조건 등에 관해 협의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직무관련자,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향응 등을 제공받거나 직위와 직무를 이용하여 회사에 피해를 끼치는 등 일체의 불법,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협력회사와의 관계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업윤리사항을 준수한다.
 1. 협력회사에 공정하게 기회를 제공하고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업무를 처리하며, 협력회사와 공동발전을 지향하여야 한다.
 2. 협력회사와의 모든 거래는 계약조건 및 절차에 따라 수행하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회사에 부당한 요구 등의 비윤리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
 3. 협력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향응, 접대, 편의, 금전거래 등을 제공받지 않는다.
 4. 협력회사의 이해관계자로부터 본 규정에 반하여 불가피하게 수수한 경우 반환여부에 관계없이 내부감사부서에 신고한다.
 5. 국내외 모든 상거래에 있어서 뇌물금지과 부패관련 협약 및 법령을 준수하여 공정한 거래를 이행한다.
- ⑥ 안전과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관련법규와 회사 사규 등 제반 기준을 준수하고 위험예방과 환경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건강한 조직분위기 조성의무)

- ① 임직원은 창의적 사고와 자율적 행동이 회사의 무형적 자산임을 인식하고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며,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여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원활한 의사소통 채널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성희롱, 풍기문란, 폭력, 폭언 및 사적인 부담을 주는 행위

강요 등 상하, 동료 간에 상호 불쾌감이나 피해를 주어 건전한 동료 관계를 저해하는 일체의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④ 임직원은 지연·혈연·학연에 근거한 파벌이나 사조직을 결성함으로써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건강한 조직문화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 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 승진, 이동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인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 승진, 이동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금품 수수 등의 금지)

-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 및 “협력회사”로부터 제3조에서 정의한 “금품”, 접대 및 향응”, “편의” 및 “금전거래”(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 2. 직무와 관련된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 3. 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4. 제3조 제1항 제4호 직무관련자가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양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 ② 임직원은 자신의 친족이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은 회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관련자,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7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금품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 ①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일체의 청탁을 배격하여야 하고, 부정한 이익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 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임직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①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공시 담당자와 사전협의 없이 사내외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회사 재산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 ① 임직원은 회사의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임직원 개인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제공하지 아니하며,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회사의 공금이나 자산을 횡령, 유용, 절취하거나 경비를 변칙 처리하는 등 직위 및 직무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임직원은 회사 내부의 지적 재산, 기밀 정보를 적절한 사전허가나 절차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임직원은 업무 활동 중 취득한 정보를 사실에 근거하여 기록, 보고하

고 회사의 지적재산으로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환경 및 안전기준 준수의무)

- ① 임직원은 환경보호와 관련된 국제기준, 관계법규, 내부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유해물질 발생의 최소화,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환경 개선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지속적인 연구와 기술개발을 통해 환경보호와 자원보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은 안전 및 건강에 관련된 국제기준, 관계법규, 내부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④ 임직원은 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하며, 위험요소 발견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준법·윤리경영 준수기간)

임직원은 회사에서 임직원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제4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서 정한 준법·윤리경영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준법·윤리경영 위반시의 조치

제14조(준법·윤리경영 위반 심의)

- ① 임직원이 제4조 내지 제12조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회사 내부감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 주관 부서에 인사위원회 회부를 의뢰할 수 있다.
 1. 준법·윤리경영 위반혐의 내용이 회사의 임직원으로 재직기간 동안 발생했는지 여부
 2. 위반혐의 내용이 준법·윤리경영 의무 금지행위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3. 기타 위반혐의 내용과 직무관련성을 판단할 수 있는 요소
- ② 인사위원회 절차 등은 인사위원회 세칙, 임원인사관리규정의 정의된 절차에 따른다.
- ③ 준법·윤리경영 위반 심의 결과는 임원평가 및 직원 인사고과에 반영할 수 있다.

제15조(관련 법규 및 사규)

- ① 관련 법규 : 형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 등
- ② 관련 사규 : 인사규정, 인사위원회규정 등

부 칙

- ① 이 규정은 2016년 9월28일부터 시행한다.